

다문화가족지원조례의 여성주의와 다문화주의적 고찰*



김도희

제1저자 울산대학교
(dhkim5090@ulsan.ac.kr)



장임숙

교신저자 경성대학교
(mukk73@naver.com)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 여성주의와 다문화주의를 담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울산지역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중심으로 적용대상 구분, 수혜자 특성, 균형 참여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울산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조례는 성별 구분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규정이 국적과 혈통 중심의 자문화중심주의를 견지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조례가 한국인여성과 결혼한 남성결혼이민자의 특성이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성주의관점을, 국적 및 이주유형에 따른 이주민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문화관점을 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여성주의, 다문화주의, 젠더, 이주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2023172)

I. 서론

세계화의 영향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이주현상은 단일민족국가인 한국사회를 다민족 국가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2000년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49만 명으로 총 인구의 1.1%였으나, 2016년 6월 기준 200만 명을 넘어 전체인구의 3.9%에 이른다. 이러한 증가세에는 국제결혼비율의 증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국제결혼비율은 1990년 전체 혼인의 1.2%에 불과했으나, 2005년 11.6%로 급증하였다. 이후 국제결혼비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저출산과 만혼화 등으로 인해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는 305,446명이고, 그 자녀는 207,693명으로 집계되고 있어 배우자까지 포함한 다문화가족의 수는 80만 명을 넘어선다. 현재의 증가추이로 볼 때, 다문화가족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결혼이민자 약 35만여 명, 자녀 약 30만여 명, 한국인 배우자 약 35만여 명으로 총 10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정현미 외 2014, 15).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따라 2008년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이 법률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은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지원을 통해 양성평등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 한식요리 강습, 임신과 출산, 아동양육에 집중되어 있어 한국사회 동화와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여성주의로부터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다.

일반적으로 다문화는 인종이나 민족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다인종, 다민족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다문화는 성별, 인종, 국적, 종교, 문화, 민족, 연령, 계층 등에 따른 집단의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그러나 다문화주의가 다양한 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집단문화에 내재한 여성 억압적인 관행까지 묵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자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한다. 즉, 여성주의 시각에서 보면 젠더에 대한 고려 없는 다문화주의는 오히려 소수민족 내부에서 발생하는 젠더불평등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가지지 못한다고 본다.

실제로 인종, 민족, 연령, 지역 등의 인구학적 조건에 젠더가 결합하면 오히려 차별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차별에 처해 있는 대표적인 예가 결혼이주여성이다. 결혼이주여성은 이주민에게 가해지는 차별, 아시아권 저개발국가 출신에 대한 폄하, 농촌 및 도시빈곤층에 대한 무시,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라는 중층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한국인 여성에 비해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와 전통적인 성역할까지 강요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의해야 할 것은 다문화가족정책의 주요 대상이 결혼이민자이고,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다문화주의관점과 여성주의관점이 모두 고려된 정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을 근거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며, 법률의 취지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세부시책들이 마련된다. 때문에 다문화정책이 다문화관점과 여성주의관점을 견지하느냐의 문제는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 여성주의와 다문화주의를 담지하고 있는지를 통합적 접근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분석대상으로 한 이유는 대다수 여성의 삶이 보다 가족지향적이고 지역친화적이어서 사실상 여성과 가족의 삶은 삶터인 지역사회의 여건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김혜순 2008, 67).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여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분석기준을 도출하고, 여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통합적 관점에서 울산의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분석한다. 울산을 연구의 지역적 범위로 설정한 것은 이주민의 비율이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데다,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대표적인 남성도시이며, 지역성평등지수 또한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점에서 여성주의 및 다문화주의의 가치 확산이 절실한 곳이기 때문이다.

II. 이론적 고찰

1. 선행연구

1980년대 이후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젠더 관점의 이주연구가 크게 증가했다. 이주분야에서 해외의 젠더 연구가 ‘돌봄 노동’이나 단순·비숙련 노동부문에서 여성노동에 초점을 둔데 비해 국내의 젠더 연구는 가족부양을 위한 결혼이민에 치우치는 편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의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이고, 이들의 대다수가 남성이기 때문에 젠더 연구자들은 자연스럽게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결혼이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젠더연구에서 다문화가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에 기인하는 바가 크고, 특히 법제적 차원의 연구는 2008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젠더관점에서 다문화

관련 법제를 분석한 국내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젠더연구는 이주의 여성화라는 현상을 중심으로 국제이주로 인한 이주여성의 차별과 배제에 역점을 두고 공적 영역보다는 사적 영역, 즉 가정에서의 이주여성의 소외와 문화갈등을 연구쟁점으로 다루었다. 법제적 차원에서는 인권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주여성 개인의 문제보다 다문화가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돕는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젠더 관점의 법제 연구로서, 장은정(2013)의 연구는 다문화정책 관련 법령 중 가족단위의 지원근거가 되는 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등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실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조항들을 고찰하고 성 평등한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법령 개선조치를 제안한다. 장은정(2013)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조례는 성별 구분 조항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지원조항 내용이 이주여성의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가정유지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두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데 기초하고 있다.

소라미(2010)는 인권과 젠더 관점에서 이주자에 대한 지원의 총론법적 성격을 갖는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국적법, 사회보장 관련법을 통해 다문화간 상호존중과 지원을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소라미(2010)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부 정책은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서 기획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은 '가족의 구성과 혈통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정책대상자로 적극적으로 포섭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일관된 법적 보호의 원인은 국민의 '배우자'와 '모성'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소라미 2010, 48).

김영주(2010)는 젠더관점과 다문화관점에서 다문화가족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정책 관점과 내용을 점검한 후 현재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과 개선점을 제시한다. 여기서 '젠더관점'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선택 및 결정권, 모성에 대한 재평가 및 지원, 자녀양육에 대한 성별분업체제 극복, 일과 가정 양립을 제시하고, '다문화관점'으로 의사소통 문제, 임신·출산과정에서의 모성건강, 임신·출산과정에서의 다문화적 차이, 자녀의 긍정적 정체성 유지와 다문화적 양육을 제시하고 있다. 김영주(2010)의 연구 결과를 보면 첫째, 현재의 정책들은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을 모자보건에 치중하고 있어 향후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하는 접근과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장과 관련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셋째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이 생물학적 건강유지의 성격을 넘어 정신 및 심리적 건강 등 다양한 차원의 지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주여성을 자녀양육 전담자로 설정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성별분

업 체계를 넘어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상과 같이 젠더관점에서 접근한 다문화 법제 연구는 법령 및 조례에 성차별적 요소와 성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다문화 관련 법제가 성 고정관념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배우자로서, 또 모성으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는 공통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2. 여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통합적 접근

이주의 여성화는 세계화로 인한 초국적 이주가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주의 전 과정 자체가 젠더관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강조한다(정현주, 2008: 191). 그런데 이주의 여성화로 인한 사회현상들이 젠더문제를 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 담론 속에서 젠더 차별은 간과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주의 여성화를 둘러싼 논쟁은 과연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가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다.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양립가능성은 크게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대별되는데, 먼저 긍정론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소수문화 존중을 강조하는 다문화주의를 채택하더라도 여성에게 해로운 문화적 관행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문경희 2013, 211).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자인 킴리카는 개인적 권리의 제한을 포함하는 '나쁜 소수자 권리(bad minority rights)'와 개인적 권리의 보완으로 간주될 수 있는 '좋은 소수자 권리(good minority rights)'를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태환 2014, 270).

그러나 다문화주의가 소수문화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불평등한 문화까지도 문화권의 개념으로 옹호한다는 것이 부정론의 비판이다(문경희 2013, 212). 대표적으로 오킨(Okin)은 “다문화주의가 여성에게 나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다문화주의자들은 집단 간의 차별에만 집중할 뿐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차별, 즉 삶의 사적 영역에 가해지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와 억압은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Okin 1999). 오킨은 킴리카가 주장하는 소수집단 권리의 구분은 충분한 해결이 되지 못할뿐더러, 공적인 영역 외에 모든 문제를 사적 영역으로 간주해버리는 공사이분법적 접근으로 인해 젠더불평등이 지속된다고 지적한다.

전경옥(2007)은 이주여성에게는 젠더불평등 상황에 공동 투쟁하는 것보다 자신들에게 부과되는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는 것이 더 큰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이주여성들은 자기집단 문화 속에 내재된 여성억압에 대해 인지하더라도 그 문화 밖의 인종차별로 인한 어려움이 더 큰 고통이며, 자기집단 문화가 보호벽이 되어 주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전경옥 2007, 14).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Burns는 이주와 젠더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

젠더는 인종 개념보다 더 가시적인 것 같지만 동시에 더욱 비가시적이다. 대개 미국인들은 인종문제보다는 젠더 문제에 대해 본질주의적 주장을 서슴지 않고 편안해 한다. 성의 구분으로 이해되는 젠더가, 인종보다 '자연스러운 개념으로' 생각되어 문제제기를 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의 위계가 직장, 가족, 학교, 종교 기관과 같은 다양한 제도적 공간에서 매우 작은 이익의 미묘한 축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가시적인 것처럼 보인다 (Burns 2005, 138-139; 김미덕 2011, 35 재인용).

그런데 여성주의와 다문화주의는 차이에 대한 인정, 정체성의 정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라는 요구는 이민자가 처한 갈등 상황에서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최현덕, 2010: 275). 최현덕(2010)은 이주여성의 경우 최소한 두 가지 중요한 권력관계가 그들의 삶에 중첩되어 있는데, 하나는 정주국의 주류사회와 이민자 집단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위계질서이며, 다른 하나는 젠더적 위계질서로,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삶의 조건에서 무시될 수 없다고 말한다. 최현덕(2010)은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이면에 작용하는 문화 본질주의를 해체하고, 문화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모색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주여성 연구의 바람직한 접근법은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관점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통합적 접근법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개념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본 연구는 여성주의를 모든 형태의 성차별과 젠더불평등에 대항하여 비차별과 성평등을 지향하는 이론적·실천적 이념으로 정의하고,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인종·민족·문화적 정체성과 소수집단 권리를 존중하고 자유와 다양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론적·실천적 이념으로 개념화한다. 그리고 통합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선행연구를 통해 여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분석기준을 도출하였다.

먼저, 여성주의 관점에서 법령과 정책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연구 내용이나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법령과 정책의 성차별적 요소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지표를 활용하고 있다(성정현 외 2003; 김경숙 외 2005; 주경미 외 2006; 김지연 외 2009; 이상문 외 2009; 문미경 외 2010; 손민정 2014; 장운정 2013;

1) 아래 Burns의 주장은 김미덕(2011)의 연구에서 재인용함(김미덕 2011, 35)

진중순 외 2014).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여성가족부 2015, 3). 이 가운데 법령에 대해 실시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①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②성별 특성, ③성별 균형 참여를 평가항목으로 삼는다. 첫째,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 둘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 셋째, 위원회, 심의기구, 협의체 등의 구성조항 및 위원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으로 지표가 구성된다.

그리고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법률적 차원의 연구는 정부의 다문화 관련 법령이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가를 가늠하는 준거로서 국적 취득의 개방성과 용이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소라미 2010; 정정훈 2010; 장윤정 2013; 서운호 2014; 김수경 2015; 황필규 2016). 선행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다문화 법제는 국적 및 체류자격 취득에서 ‘혈통주의’가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적’과 ‘국민’이라는 요소가 정책대상으로 고려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다문화주의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법률적 차원의 아니지만, 정부는 다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다문화 수용성 척도를 개발했다. 여성가족부가 3년 단위로 실시하는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척도는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이라는 3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다문화주의 개념과 관련된 ‘다양성’의 차원은 다른 집단의 정체성이나 문화유산의 가치 등을 우리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려는 태도에 관한 개념으로, 하위 구성요소는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과 차별’로 이루어진다(안상수 외 2012). 다문화수용성 척도에서 ‘다양성’을 측정하는 하위 구성요소도 다문화주의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문화주의의 평가기준을 통합하면 국적 및 국민, 문화다양성, 고정관념과 차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성주의관점의 법률분석에서 중요한 평가항목과 다문화주의관점의 중요한 평가기준을 조합하여 통합적 접근의 분석기준을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첫째, 정책대상에 대한 구분 여부이다. 법령이 성별 및 국적(국민)에 대한 구분 조항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둘째, 수혜자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성별 및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셋째, 비차별적 균형 참여 기준이다. 위원회, 심의기구, 협의체 등의 구성조항 및 위원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이 여성 및 이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한 균형 참여인지를 통해 차별 여부를 파악한다.

〈표 1〉 여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분석기준

구분	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여성주의 접근	성별 구분/성 고정관념	다문화주의 접근	국적 및 국민
	성별 특성		문화다양성
	성별 균형참여		고정관념과 차별



구분	분석항목	세부 내용
통합적 접근	적용대상 구분	성별 및 국적에 대한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수혜자 특성	성별 차이, 문화적 차이 등 수혜자 특성과 관련한 규정
	균형 참여	성별, 국적별, 이주유형별 대표성을 고려한 균형참여

Ⅲ. 여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다문화 가족지원조례 분석

1. 울산시 다문화가족과 관련 조례의 현황

정부는 외국인의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거주 외국인지원조례’와 ‘외국인주민인권조례’,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국제결혼지원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마련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 2월 현재 총 22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62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으로 분리되어 있던 지원조례를 통합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로 일원화하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조례의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사업 등 상위법 우선의 원칙하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준하여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과 고유의 정책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다문화정책과는 다른 정책의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하며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과 수행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내용이 필요하다(장온정 2013, 208).

2015년 기준 울산의 이주민 수는 총 38,183명으로 총 인구의 3.3%를 차지하여 6대 광역시 가운데 이주민 비율이 가장 높다. 이주민은 국적미취득자가 30,881명, 국적취득자가

2,743명, 외국인주민 자녀가 4,559명으로 구성된다. 국적미취득자 중에서 이주노동자가 13,779명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외국국적동포 5,038명, 결혼이민자 3,007명, 유학생 839명의 순이다. 국적취득자는 혼인귀화자가 1,969명, 기타 77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3007명, 혼인귀화자 1,969명, 자녀 4,559명, 그리고 결혼이민자와 동수의 배우자를 포함해 총 14,511명이다. 자치구별 다문화가족은 중구 2,787명, 남구 3,337명, 동구 2,654, 북구 2,472, 울주군 3,261명으로 남구와 울주군이 가장 많으며, 특히 자치구 인구 대비 다문화가족 수는 울주군이 가장 많다.

〈표 2〉 울산시 다문화가족 현황

(단위 : 명)

지역	울산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외국인주민	38,183	4,542	8,765	8,863	4,099	11,914
다문화가족	14,511	2,787	3,337	2,654	2,472	3,261
결혼이민자	3,007	601	743	507	440	716
혼인귀화자	1,969	388	462	368	370	381
자녀	4,559	809	927	904	852	1,067
배우자	4,976	989	1,205	875	810	1,097

출처 : 행정자치부, 「2015 외국인주민현황」

울산광역시시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7년 11월에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10년 1월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설치함으로써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별도의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구·군의 경우, 북구와 중구는 ‘다문화가족지원조례’와 ‘외국인주민지원조례’를 모두 두고 있고, 남구와 울주군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일원화하였으며, 동구는 ‘거주 외국인주민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 적용대상 구분

2016년 11월 기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는 총 9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례의 구성은 조례의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시장의 책무(제3조), 시행규칙(제9조) 등으로 이루어진 규범체계와 다문화가

족을 위한 지원사업(제4조),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제5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제6조)와 구성 및 운영(제7조) 등 실제적인 집행을 위한 실효체제로 구성된다.

조례의 목적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조례에 성별 구분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동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와 출생 및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함으로써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와 그 가족에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규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기초한 것으로, 이주노동자, 외국인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난민 등과 그 가족들은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한국인과 가정을 구성한 결혼이민자에게만 정착지원을 보장하는 것은 ‘가족의 구성과 혈통의 유지’라는 측면이 적극적으로 고려된 결과로서 국적과 혈통에 기반을 둔 차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소라미 2010, 50).

실제로 과거 국적법은 혈통주의, 그것도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한쪽 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1997년 이전에 국적법은 ‘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그 자녀가 국적을 자동 취득할 수 있도록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이 규정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확대됨으로써 1997년 정부는 국적법에 남녀평등원칙을 적용하여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였다. 당시 국적법 개정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 권리, 의무를 남성과 동등하게 인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 개정 이유는 국내 다문화가족자녀에 대한 법적, 인권적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당시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무국적자로서 취학, 의료보험, 범죄피해 구제 등 기본권 보장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와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는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와 같은 정의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남구와 울주군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례를 통합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를 둬으로써 조례 적용 대상에 “결혼이민자 및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과 관내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조항에도 한계가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출산 및 건강, 기타 이주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생계활동을 중단한 이주민, 가사노동 및 양육·노부모 봉양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민, 관내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미등록 이주여성 등은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소라미 2010, 54). 그런데 많은 국가들에서 정책대상에 미등록 이주자를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정치적이고 논쟁적인 문제이다. 다만 남구와 울주군의 조례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을 구별하여 지원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울산광역시 동구 거주 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는 다소 전향적이다. 동구는 조례 적용 대상을 “결혼이민자 포함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그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원범위가 다소 포괄적이다. 게다가 지원 대상에 재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범위에 차이를 두지 않고 동등하게 처우한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각 조례에서 제시하는 정책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둘째, 결혼이민자 등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는 관내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을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등을 지칭하고 있다.

결국, 여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통합적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한 축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인 자’를 필수 성원으로 규정하면서 다른 축으로 ‘다문화’적 요소로서 결혼이민자와 인지,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적 및 혈통에 의해 구분을 두고 있으며(박복순 외 2013, iii), 체류기간과 체류목적에 제한을 두는 외국인주민은 체류유형에 의해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표 3〉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정책대상

구분	정책대상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90일 이상 거주 외국인	긴급 구호 및 불법체류 해소
울산광역시	○	○		
남구	○	○	○	
동구	○	○	○	○
북구	○	○		
중구	○	○		
울주군	○	○	○	

다문화주의가 다양한 인종·민족·문화적 정체성과 소수집단 권리를 존중하고 자유와 다양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조례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용과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국적과 혈통 중심의 자문화중심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국적과 혈통에 치우친 조례는 가족 내 국적이나 혈통이 다른 가족구성원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가족문화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며, 가족 내 불평등한 위계질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여성은 불평등한 가족관계와 가부장적인 가족문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문화주의 관점을 결여한 다문화가족지원조례는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잠재적 몰성성(gender-blindness)의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 고정관념과 관련해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북구와 중구의 조례에 명시된 지원사업은 성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5조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결혼이민자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육,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가족생활 교육, 산전 산후 건강관리 지원, 다문화가족 내 아동보육 및 교육사업 등을 지원사업으로 규정한다. 이는 가정유지에 근거해 결혼형성 및 가정 유지와 이주여성의 가정 내 역할수행을 위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가정 내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과 고정관념을 이주여성에게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장온정 2013, 216).

이것은 남구와 울주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7조를 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생활정보제공 및 상담, 각종 문화 체육행사 개최, 외국인주민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 및 교육사업 등으로 구성되는데 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과 아동의 보육·교육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으로 가정유지를 위한 지원과 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주를 이룬다. 즉,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가족구성원 모두를 위한 조례라기보다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이며,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이주여성의 역할만을 강조한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반면에 「동구 거주 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는 지원대상을 거주 외국인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다음, 그 지원범위를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생활·법률·취업 및 고충 등에 대한 상담, 문화체험·체육행사 개최, 외국인 가정 복지증진 사업, 외국인근로자 귀국 정착프로그램 개발 운영, 거주 외국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 등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범위를 달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동구 조례는 성별 및 국적에 의한 차별을 개선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표 4〉 울산지역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구분	분류										
	적응 교육	보건의료 (산전산후)	가족관계 지원	가정폭력 /인권	직업훈련 /일자리	아동보육 /교육	언어 지원	문화/ 체육행사	상담/ 정보제공	이해교육 /홍보	기타
울산시	○	○		○		○	○		○	○	
남구	○	○	○	○	○	○	○	○		○	
동구	○	○		○	○			○	○	○	○
북구	○	○	○	○		○				○	○
중구	○	○	○	○		○	○				
울주군	○	○	○	○	○	○	○			○	

현재의 다문화가족정책은 가족정책이 아닌 여성정책이며, 결혼이주여성을 여성으로만 환원한 몰이민성과, 이주여성만을 지원하면서 초청남성은 전형화·비가시화한 몰성성이 결합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남성대상 사업이 없거나 남성참여가 낮다는 몰성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초청자-이민자라는 이민관계의 성별화를 감안하지 않는 몰이민성과 몰성성의 결합이 문제라는 것이다(김혜순 2014, 331-332). 결국, 다문화가족지원조례는 여성주의관점에서 볼 때 성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다문화주의 관점에서도 잠재적 국민인 결혼이민자와 일반 외국인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국적(혈통)에 의한 차별을 내포한다.

3. 수혜자 특성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자치구의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서 수혜자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한국인여성과 결혼한 남성결혼이민자의 특성이나 요구를 반영한 조항은 찾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2013년 울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사업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으므로 서비스 이용대상 및 수요에 차이가 발생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의 결혼이주남성의 참여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으나, 수혜를 받지 못했던 결혼이주남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예산을 배분하도록 권고했다(여성가족부 2013, 60).

그러나 다문화가족정책에서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결혼이주남성은 사회적으로 정책대상으로서 다른 집단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김혜순(2008)은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의 절반 이상은 미국, 캐나다, 일본 국적으로 위계적 성별분담과 가족중심주의가 한국보다 희박할 뿐만 아니라 남성으로서 한국가족에 적응하고 통합될 것에 대한 요구가 여성의 경우와 다르다고 주장한다(김혜순 2008, 42-43).

다문화가족지원조례는 성별 특성뿐만 아니라 다문화주의관점에서 다양한 이주민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구, 울주군과 같이 통합 조례의 경우, 적용대상에 다문화가족과 함께 거주외국인이 포함되는데, 이주노동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난민 등으로 이주유형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고, 출신국적에 따라서도 문화적 욕구가 상이하므로 이러한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출신국적과 이주유형에 따라 이주민의 규모가 상이하므로 집단에 따라 자원동원과 정보획득의 원천이 되는 사회네트워크에 격차가 발생한다. 이것은 성별, 국적별, 이주유형별로 공적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와 정책수요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므로 조례의 지원사업은 다양한 이주민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균형참여

성별, 국적별, 이주유형별 이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한 비차별적 균형참여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6조에 의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수립 및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다문화가족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평등한 균형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야 되는데 조례에는 성비는 물론이고 이주민의 참여비율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동 조례 제7조에서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은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자와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지방경찰청,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 및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자, 그 외 다문화가족 전문가 및 다문화가족 대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를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도 위원회 및 협의회의 구성 및 자격 요건에 성별 균형참여를 위한 남녀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6조(위원회 구성)는 당연직 위원 외에 북구의회 의원, 다문화가족 지원 및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관계전문가, 다문화가족대표,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구와 울주군은 위촉직 위원으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교수 등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명시하고, 중구와 동구는 위촉직 위원으로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남성이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므로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 반드시 성별 균형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성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2014년 1월말 현재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²⁾는 당연직 위원 7명과 위촉직 위원 8명으로 구성되는데, 남녀 성비 구성은 11대4로 여성위원의 비율이 26.7%를 차지하여 여성위원의 비율이 낮다(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내부자료, 2014). 물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면 4대4로 위촉직 위원의 남녀 성비는 균형을 이룬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위원회의 구성에 공무원이 전체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가능한 한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옥경희 외 2012, 163). 사실상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위원회 등의 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상적, 공식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하여 양성평등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 및 유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정부위원회 성비할당(60%)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³⁾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15,584개)의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30.1%로 여성위원 수가 47,911명이며, 이 중에서 광역자치단체는 28,555명 중 8,705명으로 전체의 30.5%이고, 기초자치단체는 130,513명 중 39,206명으로 여성위원의 비율이 30%를 차지해 여성위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⁴⁾

한편,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볼 때 울산시와 북구, 남구, 울주군 조례는 다문화가족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지만 중구, 동구 조례는 다문화가족의 참여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의 위원 중 이주민은 1명에 불과해 이주민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전부터 위원회 설치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부분은 외국인 혹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의 위원회에 일원으로 포함되지 못한다는 것이다(옥경희 외 2012, 163). 현재까지 이주민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은

2) 울산광역시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로 통합하여 협의회 운영을 일원화하였다.
3) 2014년 10월말 기준으로 전체 8,305명의 위촉직 위원 중에 여성위원의 수는 2,630명으로 전체의 31.7%를 차지한다(<http://www.mogef.go.kr>).
4) 출처: <http://www.mogef.go.kr> (검색일: 2016. 11. 07.).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상당히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이혜진·장임숙 2015, 303).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최근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주민이 직접 의사를 대변하는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스스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이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구 구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컨대,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성별차이를 반영하고, 외국인밀집지역 등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동포, 난민, 유학생, 영주권자 등 이주유형별 인구비율과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일본, 미국 등의 출신국적별 구성 비율에 비례하여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혜진·장임숙 2015, 331). 결국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다양한 이주민의 참여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범주를 확대하여 이주노동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난민 등 다양한 이주민가족이 정책대상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동등한 참여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비차별적인 균형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 성·민족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여성주의 관점과 다문화주의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울산지역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중심으로 첫째, 적용대상 구분 조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둘째, 수혜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분석하며, 셋째, 위원회 등의 규정에서 성별, 국적별, 이주유형별 등을 고려한 이주민의 균형참여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적용대상 구분과 관련해 울산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조례는 성별 구분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동구를 제외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규정이 국적과 혈통 중심의 자문화중심주의를 견지하고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여성은 불평등한 가족관계와 가부장적인 가족문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문화주의 관점을 결여한 다문화가족지원조례는 결과적으로 젠더 관점의 결여로 귀결되고 있다.

더구나 조례에 명시된 지원사업은 대부분이 가정유지를 위한 지원과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통적인 성역할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다문화주의 관점에서조차 잠재적 국민인 결혼이민자와 일반 외국인을 구분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국적 및 혈통에 의한 차별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주민의 일상적인 삶과 직결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는 적용대상에 구분을 두지 않고, 이주민 가족이면 누구나 법률이 부여하는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이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 수혜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조례가 한국인여성과 결혼한 결혼이주남성의 특성이나 요구를 비롯해 국적, 이주유형에 따른 이주민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성별,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수혜자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문화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성별 차이는 물론이고 민족적,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울산지역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는 이주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균형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직 위원의 수를 최소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에 관련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다양한 이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의 범주를 확대하여 이주노동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난민 등 다양한 이주민가족이 정책대상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동등한 참여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이주유형별 균형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 울산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 대한 정보만을 담고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사례연구의 본질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이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표준조례안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조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추측된다. 더불어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김경숙·김수연·여지은. 2005. 생활체육시설의 성인지적 관점 접근 정도에 대한 분석.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9(3), 49-66.
- 김미덕. 2011. 정치학과 젠더: 사회분석 범주로서 젠더에 대한 이해. 한국정치학회보 45(2), 31-49.
- 김수경. 2015. 이주민의 인권과 국가 안보-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26, 187-214.
- 김영주. 2010.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인구학 33(1), 51-73.
- 김지연·김정희. 2009.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성 형평성 분석: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6(3), 399-421.
- 김태환. 2014. 이민정책의 규범적 기초로서 다문화주의: W. Kymlicka의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2014년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63-281.
-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고 한국의 다문화노사사회 실험. 한국사회학 42(2), 36-71.
- 김혜순. 2014. 결혼이민여성의 이혼과 '다문화정책': 관료적 확장에 따른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의 물이민적·물성적 결합. 한국사회학 48(2), 269-270.
- 문경희. 2013. 다문화주의와 여성-유럽의 최근 이민·사회통합 담론 및 정책의 변화와 여성과 문화에 대한 논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젠더와 세계정치, 187-231.
- 문미경·진종순. 2010. 농업인대학 교육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한국사회와행정연구 21(2), 215-239.
- 박복순·박선영·송효진·선보영·강기정. 2013.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서윤희. 2014. 이주인권과 이주법제의 현실. 통일인문학 57, 221-257.
- 성정현·최승화·이영미. 2003.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여성장애인의 건강과 교육, 취업 문제. 비판사회정책 15, 163-196.
- 소라미. 2010. 젠더와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문화가족지원법제 검토. 젠더법학 2(11), 43-79.
- 여성가족부. 2013. 2013년 울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 옥경희 · 박미정 · 이은희. 2012. 인권관점에서 본 다문화가족분야 지원 조례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이로미·장서영. 2010. 다문화국가 이민자 정착 정책 및 지원 서비스 분석: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14(1), 179-208.
- 이상문·전영옥. 2009.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김포한강신도시의 여성친화도시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60, 215-231.
- 이혜진·장임숙. 2015.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 기억과전망 32, 293-342.
- 장운정. 2014. 성주류화 관점에서 본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법령 개선 방안. 비판사회정책 39, 190-234.
- 전경옥. 2007. 젠더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 아시아여성연구 46(1), 7-42.
- 정정훈. 2010. 외국인 인권 기초 연구. IOM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 정현미·장명선·박귀천·한지영. 2014. 결혼중개업 법·제도에 대한 사회통합적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정현주. 2008. 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대한지리학회지 43(6), 894-913.
- 주경미·김현지·이옥경·오재환. 2006. 부산광역시 문화서비스 공급정책의 성별영향평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진중순·김기형·문미경. 2014. 정보화마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선방안 연구. 국가정책연구 28(2), 1-26.
- 최현덕. 2010.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 사이의 갈등에 전제되어 있는 문화개념에 관하여. 사회와 철학 20, 259-284.
- 황필규. 2016. 5.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 인권법학회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동집담회 (2016. 05. 19.)
- Okin, Susan M. 1999. Is multiculturalism bad for women?. In Cohen, J., Howard, M. and Nussbaum, M(eds). Is multiculturalism bad for wome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투고일: 2016. 9.12. ● 심사일: 2016.10.14. ● 게재확정일: 2016.10.30.

A feminist and multi-cultural approach to ordinance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Jang, Imsook (Kyungsoong University)

Kim, Dohee (University of Ulsan)

This research studies regional ordinances for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in view of feminism and multiculturalism. More specifically, this research focuses on analysis of distinction in applying, beneficiary's characteristics, the equi-participation in the city ordinance for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in Ulsan a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ity ordinances of Ulsan do not have clauses related to gender discrimination, but the definition of multi-cultural family adheres to ethnocentrism based on nationality and ancestry. Also, most of ordinances lack considerations from gender point of view since they do not accommodate the characteristics or requirements of male immigrants who have married Korean females. Furthermore, most of the ordinances lack considerations from the multi-family point of view in a sense that they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requirements and characteristics of immigrants according to the nationalities and immigration types.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Regulation, feminism, multiculturalism, gender, migration